오스트리아법원, 소니 "워크맨" 상표권 무효 판결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소니의 휴대용 오디오인 "워크맨"에 대해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독일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두덴(Duden) 사전이 워크맨에 대해 회사명 언급없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명시하고 있으나, 소니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제 "워크맨"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소니의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오스트리아의 전자 도매업체들이 모든 회사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모두 "워크맨"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관행과 관련, 소니가 "우리의 상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소니 측은 이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앞으로 "워크맨"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P&G, 코카콜라 제소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프록터앤드갬블(P&G)은 지난주 말 칼슘성분을강화한 과일주스음료 제조기법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혐의로 세계 최대 청량음료제조업체인 코라콜라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P&G는 코카콜라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G는 소장에서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미니트 메이드' 주스제품 중 최소 2개 종류가 칼슘성분이 함유된 P&G의 '서니딜라이트'와 P&G와의 독점계약에 의해 펩시가 생산하는 '트로피카나' 음료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음료제조기법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코카콜라 미니트 메이드 사업장의 댄 샤퍼 대변인은 "코카콜라는 지난 87년 이후 칼슘이 함유된 오렌지주스를 제조해왔고 당시 사용했던 제조기법을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G의 갑작스런 특허권 침해소송과 관련해 시장일각에서는 지난해 P&G와 코카콜라가 벤처기업 설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코카콜라와 P&G는 미니트 메이드 등 과일음료와 스낵제품에 대한 글로벌마케팅을 담당하는 40억달러 규모의 벤처기업 설립을 추진했지만 지난 4분기 때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

출처 매일경제

"대우" 브랜드사용료 내라

제너럴 모터스(GM)의 대우차 인수에 '대우' 브랜드 사용문제가 막판암초로 등장했다.

외국시장에서 '대우' 상표권을 가진 대우인터내셔널이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GM측은 '무상사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사용료 타결이 안되면 대우차 매각 본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우자동차 매각팀 관계자는 "대우라는 명칭과 로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놓고 상표 소유권자인 대우인터내셔널과 최근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우' 라는 상표는 외국시장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이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자동차 대우조선해양 대우전자등 옛 대우 계열사 공동명의로 돼 있다.

따라서 신설법인인 GM ⇦대우가 외국에서 이 상표를 쓰려면 대우인터내셔널측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내시장에서는 기존 상표 소유기업에서 합의를 얻어 공동소유권자에포함돼야 한다.

국내는 물론 유럽과 일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우 상표를 계속사용할 계획인 GM ⇦대우는 결국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협상 초기 단계인 현재 양측은 사용료 문제에서 큰 견해차를보이고 있다.

매각팀 고위 관계자는 "대우 브랜드는 과거 그룹시절 편의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에 등록된 것일 뿐"이라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는데 다른 계열사들이 큰 기여를 한 만큼 이제와서 로열티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인터내셔널측은 "브랜드 사용 기업이 바뀐 만큼 협상을 통해 적정 사용료를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내 다른 자동차회사가로열티를 지급하는 사례를 봐도 무상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주장했다.

출처 매일경제

표절 · 특허침해 시비 인터넷 업체들…물고 물리는 법정싸움

인터넷 업체인 싸이월드는 지난 2월말 서울지방법원에 프리챌의 홈페이지 서비스인 마이홈피에 대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리챌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표절,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싸이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나 프리챌이 싸이월드의 표현 양식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싸이월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프리챌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기술(IT)업계가 표절.특허침해 소송 등으로 시끄럽다.

인터넷업체가 서비스나 콘텐츠의 표절 논란에 휘말리는가 하면 대기업이 직원으로부터 특허와 관련,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인터넷업계 표절.특허침해 논란=인터넷 업계의 표절 논란은 싸이월드-프리챌의 경우뿐이 아니다.

수십개 업체가 표절 등으로 얽히고 설켜 있다.

최근 홈페이지 제작 관련 특허를 받은 하이홈은 홈페이지 관련 업체 5~6개사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 회사의 최재학 사장은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상대 업체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우리가 이런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좋지만 기술적인 부분까지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결제와 벨소리 관련 업체의 공방은 더욱 심각하다.

인포허브.다날.모빌리언스.야호커뮤니케이션 등 4개 업체는 각종 소송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다날은 지난 1월 휴대전화 결제특허를 갖고 있는 인포허브를 상대로 특허무효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신청을 냈다.

모빌리언스도 자사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휴대전화 결제방식과 인포허브의 특허는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냈다.

이에 인포허브는 지난해 10월 획득한 휴대전화 결제 특허(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를 근거로 경쟁업체인 다날. 모빌리언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인포허브와 다날은 지난달 25일 서로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화해했으나,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 사이의 법정공방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인포허브가 모빌리언스를 대상으로 낸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인포허브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 및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인포허브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는 휴대전화 번호의 신용을 신용평가기관, 자체 구비한 데이터베이스, 이동통신사에 조회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 법원이 특허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호커뮤니케이션과 다날과의 분쟁도 복잡하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다날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야호측은 "1999년 당시 야호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를 다날이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다날의 벨소리 서비스인 투넘버 서비스로 얻게 될 매출의 20%를 받기로 계약했지만 다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IT교육·성인포털·성인 인터넷방송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악성 스팸메일을 보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IT관련 서비스가 비슷한 때에 집중적으로 시작된 데다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소송이 잇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대기업도 소송에 휘말려=삼성전자의 전.현직 직원 두 명은 최근 서울지법에 삼성전자가 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에 애니콜의 자판방식인 천지인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특허의 실시금지 및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자판의 발명이 직무나 상급자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유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은 삼선전자가 아닌 우리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규 아이템 개발부서인 타임머신팀에서 아이디어 개발업무를 맡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1994년 천지인을 개발, 특허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개인발명인지 직무발명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음반업체들, 유사 냅스터 고소 잇달아

미국 음반업체들이 온라인 음악파일 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고삐를 좀처럼 늦추지 않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음반협회(RIAA)와 미 음반사협회(NMPA)가 냅스터에 이어 또다시

오디오갤럭시(Audiogalax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디오갤럭시는 1천50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온라인 음악 파일 교환 서비스.

텍사스 대학에서 개발한 음악 파일 검색 엔진을 토대로 최근 1~2년간 급속히 성장해 온 닷컴이다.

특히 지난해 냅스터 폐쇄 이후 상당수 네티즌들이 오디오갤럭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디오갤럭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창업자인 마이클 머헤(Merhej)는 "음반협회의 처사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출처 inews24

디즈니, 저작권 소송 장기화로 수억 달러 손해 볼 듯

월트 디즈니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위니 더 푸우' 캐릭터에 대한 오랜 법정 투쟁 탓에 소송 비용 및 향후의 저작권료로 수억 달러를 지급할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디즈니는 공시에서 처음으로 소송 관련 비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91년 위니 더 푸우 캐릭터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스티븐 슬레진저사가 디즈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년에 걸친 공청회 및 협상 끝에 2003년 2월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디즈니 대변인은 "재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이를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슬레진저측 변호인단은 디즈니사에 의한 피해 규모는 최대 2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슬레진저사는 홈 비디오,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앞으로 개발될 다른 영상 장비 들에 대해 디즈니측에 위니 더 푸우의 저작권료를 요구하하고 있다.

디즈니는 지난 83년 슬레진저와의 합의에서는 저작권 지급이 완구, 잠옷, 베갯닛 등 일부 제품으로만 제한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로이터

도시바와 반도체 맞소송

삼성전자가 도시바와 반도체 특허침해를 놓고 맞소송에 들어간다.

KOTRA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도시바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반도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상대로 역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바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삼성전자와 미국 법인인 삼성세미컨덕터,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에 대해 특정반도체와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것을 요청했다.

ITC는 델버트 테릴 판사를 이번 특해침해 분쟁의 조사 책임자로 지명,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측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도시바에 앞서 마쓰시타전기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도시바의 특허침해 소송과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착수 소식과 관련, 역소

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반도체 특허들도 도시바에 의해 사용되고 있고 삼성의 선행기술도 많은 만큼 역소송으로 적극적인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특허에 대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양사간 입장차이가 커 협상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 법적대응에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경제

휴대폰결제 특허권분쟁 더 꼬인다

휴대폰 결제 업체들의 특허권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인포허브는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항고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가운데 모빌리언스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나선 것.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인포허브의 특허는 전자화폐 계정서버에 입력된 회원정보를 근거로 구매 인증여부를 결정한 반면 모빌리언스의 구매인증은 이동통신회사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포허브의 특허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포허브가 모빌리언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획득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 다날과 모빌리언스가 인포허브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그러자 인포허브도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내 법적 문제로 비화됐다. 그후 지난 4월 다날과 인포허브는 상호 특허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결국 인터넷업계에 태풍을 몰고온 이 특허관련 소송은 인포허브와 모빌리언스의 싸움으로 압축됐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포허브는 자사가 획득한 휴대폰 번호의 신용조회 특허범위는 신용평가기관을 비롯해 자체 데이터베이스,이동통신사 등을 모두 포괄한 것인데 법원이 특허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및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포허브는 모빌리언스의 결제방식이 자사 휴대폰 결제 방식과 같은 7단계를 모두 따르고 있는데도 구매승인 주체가 이동통신사라는 부차적인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가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판단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은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인포허브의 사업과 향후 활동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모빌리언스는 이 결정을 토대로 그동안 회사 임직원,투자자,제휴사 등에서 겪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본안소송에서도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모빌리언스 황창엽 사장은 "이 결정으로 향후 시스템 확장 및 서비스 개선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최초로 실시한 국내 휴대폰 결제솔루션의 해외 시장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포허브가 모빌리언스 양측은 한치도 물러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적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결국 모빌리언스가 인포허브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스위스 '샴페인' 마을주민 상표권 존속 투쟁

전체 주민이 660명에 불과한 스위스 보(Vaud) 칸톤(州) 소속의 한 작은 마을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포도주의 상표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마을의 포도재배업자 43명은 스위스가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양자협정이 정식 발효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백년동안 사용해온 '샴페인의 포도주'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사활을 걸고 양자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들 재배업자는 조상들이 대대로 거주해온 마을의 고유한 지명을 자신들이 제조하는 포도주의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포도재배가 시작된 것은 지난 885년이며 샴페인의 불어 용어인 '샹파뉴(Champagne)'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은 12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상표권수호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베르 반데레는 연간 생산되는 28만병의 포도주에 '샴페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100만프랑(8억원) 이상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데레 위원장은 법적 투쟁을 위해 2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승리를 장담했다.

반데레 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도 약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사회의 독선적인 요소들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수백만명의 샴페인을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포도주 제조업자들에게 '샴페인' 상표사용을 양허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증류주의 원산지 표시와 상표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그룹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 대한 특별협상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이 협상기구의 위원장은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윈도'는 일반명사"… 미 법원, MS 소송 기각

마이크로소프트(MS)가 린도즈(Lindows)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지난 1차 판결에 이어 다시 기각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MS는 린도즈 OS가 윈도와 유사한 제품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린도즈를 상대로 윈도(Windows) 상표권을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맡은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열린 1차 판결에서 MS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 2차 판결에서도 사이트 폐쇄와 제품 홍보 중지를 요구하는 MS의 청구를 기각했다. 존 코프헤너(John Coughenour)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윈도(Windows)는 일반명사이며

윈도 운영체제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windows나 window, widnowing이라는 단어가 컴퓨터 유저 인터페이스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명사는 특정 회사의 상표명이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한 것.

특히 코프헤너 판사는 MS 스스로가 윈도 운영체제 매뉴얼에 windowing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윈도(windows)라는 단어가 윈도우 기능을 가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가리키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윈도라는 명칭은 MS의 소유"라는 컴퓨팅 업계의 일반적인 관념이 깨지게 됐다. 즉 린도우즈 외에도 다른 업체에서 유사한 제품 명칭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MS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소송을 계속 제기할 것임을 확인했다.

MS 대변인은 "윈도 상표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비싼 상표 중 하나"라며 "수년간 윈도라는 상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해 왔는데 그 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항변했다.

출처 inews24

국내 · 다국적제약社 갈등 확산.. 특허권 · 광고 · 신약개발 등 곳곳 충돌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그냥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특허권 신약개발 의약품광고 접대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사와 토종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에 맞서 토종들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 불법광고 논쟁 =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비만캠페인 때 후원사인 한국로슈가 '제니칼'을 불법광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의뢰했다.

약사회측은 약사법으로 전문약 대중광고를 불허하고 있는데도 홍보책자에 제니칼을 소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에는 전문약의 경우 서적이나 간행물을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6개월간 판매를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 특허분쟁 = 보령제약은 미국 화이자를 상대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물질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특허청에 청구했다.

보령은 공정과 수율을 개선한 기술이 선행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근당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면역억제제 '사이폴 엔'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침해 소송(1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종근당의 사이폴 엔 제조방법이 노바티스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노바티스가 제기했던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성분으로 만든 사이폴 엔은 장기이식수술 뒤에 나타나는 면역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노바티스가 국내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 신약 공동개발 무산 = LGCI에 이어 유한양행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의 신약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GSK는 LGCI의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와

유한양행의 차세대 항궤양제 'YH-1885'의 상품화를 잇따라 포기했다.

이는 양사간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과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휴를 통해 기술내용을 속속들이 알아낸 다음 공동개발을 포기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과잉접대 규제=토종들은 의료 관계자들의 해외세미나 지원범위를 사회자 토론자등 행사와직접 관련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학술목적이 경우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세미나지원을 명분으로 의료 관계자들을 지원, 문제를 일으켜왔다.

◆ 수입전환시 최저약가 적용=다국적 제약사는 국내제조 의약품을 수입으로 전환했을때 최저가를 받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오리지널리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하고있다.

이에 대해 토종들은 값싼 수입품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복지부방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한국경제

디지털 녹화기 저작권 분쟁

디지털 시대의 첨단기기들이 미국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의 소닉블루사가 지난해 내놓은 디지털 TV녹화기(상품명 리플레이 TV)가 최근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이 녹화기는 비싼 가격(대당 7백달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소송에 휘말린 것은 소비자들이 이 기기를 이용, TV에서 방영되는 각종 영화와 프로그램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헐리우드 영화업계와 대형 방송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1998년 제정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소닉블루는 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는 제소자측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진짜 속셈은 소비자들이 이 녹화기를 이용해 프로그램 중간에 수시로 끼어드는 광고를 보지 않음에 따라 야기되는 광고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으로 음악방송을 내보내는 웹라디오 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작곡가 뿐아니라 음반업체.공연.반주자들에게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현재 법개정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출신의원들이 제출한 복사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에 비하면 약과다.

이 법안은 모든 HD-TV.DVD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콘텐츠의 무단 복사를 막는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사용도 개인용으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행정부와 의회가 저작권 보호에 치중해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